

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192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3. 8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2020년 코로나-19 대유행으로 인한 달성(향토·전통)음식경연대회 및 뮤지컬로 배우는 음식문화개선 사업 미운영으로 2021년도 수입의 예치금회수 및 지출의 예치금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변경되어 지방기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변경계획(안)

- 식품진흥기금 총 비교증감액 : 금 54,525천 원

(단위 : 천 원)

구분	세부사업(편성목)	경정액	기정액	증감
수입 변경 계획	수입 총계	229,338	174,813	54,525
	· 세외수입	44,000	44,000	-
	· 보조금	32,000	32,000	-
	· 보전수입 등			
	- 예치금 회수(714-01)	153,338	98,813	54,525
지출 변경 계획	지출 총계	229,338	174,813	54,525
	· 식품진흥(식품진흥기금)	89,600	89,600	-
	· 보전지출(식품진흥기금)	139,198	84,673	54,525
	- 보전지출			
	예치금	104,848	50,523	54,325
	- 반환금 기타	34,350	34,150	200
	시비보조금 반환금	14,350	14,150	200
	과징금 과오납금 반환	20,000	20,000	-
	기타	540	540	-

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 심의요구서

심의요지	○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(안) 심의					
심의사유	○ 기금 결산에 맞는 예치금액 반영 및 보조금 반환을 위해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운용 변경계획(안) 심의 요구					
변경·심의 사 항	○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(안) (단위 : 천 원)					
	구 분	세부사업(편성목)	경정액	기정액	증 감	
	수 입 변경 계획	수입 총계	229,338	174,813	54,525	
		· 세외수입	44,000	44,000	-	
		· 보조금	32,000	32,000	-	
		· 보전수입 등				
		- 예치금 회수(714-01)	153,338	98,813	54,525	
	지 출 변경 계획	지출 총계	229,338	174,813	54,525	
		· 식품진흥(식품진흥기금)	89,600	89,600	-	
		· 보전지출(식품진흥기금)	139,198	84,673	54,525	
		- 보전지출				
		예치금	104,848	50,523	54,325	
		- 반환금 기타	34,350	34,150	200	
		시비보조금 반환금	14,350	14,150	200	
		과징금 과오납금 반환	20,000	20,000	-	
		기타	540	540	-	
	관계법령 등 참고사항	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.				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**지방기금법 제11조(기금운영계획의 변경)**

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5.7.24.>

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.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 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<개정 2015.7.24.>

※ 지방재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
(정책사업·재무활동·행정운영경비 각각을 의미)

※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(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)참조

－ 결산에 따른 ‘예치금’ 조정 시, 기존 ‘재무활동’(예치금의 상위개념) 금액의 20%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 필요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5.30.>